

※ 예시문제이며, 시행 시 요구사항 및 도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문제

자격종목	지적기능사	과제명	지적제도 및 면적측정
------	-------	-----	-------------

※ 시험시간 : 2시간 30분

1. 요구사항

※ 지급된 재료(CAD 파일)을 보고 CAD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래 요구사항에 맞게 답안지를 작성하고 최종 지적측량결과도를 완성하여 파일을 저장한 후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 지급된 용지에 본인이 직접 출력하시오.

1) 주어진 지적기준점을 입력하고 지적기준점 4118을 이용하여 도곽선 좌표를 계산하여 이를 포용하는 축척 1200분의 1 도곽을 구획하시오.

(단, 원점의 가산수치는 X=500,000 m, Y=200,000 m 이다.)

지적기준점	좌표		비고
	X [m]	Y [m]	
4118	45 3478.70	19 3664.65	
4119	45 3405.55	19 3726.90	
4120	45 3355.05	19 3603.80	

2) 주어진 관측점의 방위각과 거리를 이용하여 경계점을 계산하고, 관측점 순서대로 필지를 완성하시오.

(단, 좌표결정은 m 단위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구하시오.)

측점	관측점	방위각	거리	비고
4119	1	88° 47' 13.26"	119.99	
	2	94° 37' 37.18"	202.31	
	3	120° 44' 37.00"	185.90	
	4	151° 23' 34.09"	78.70	

자격종목	지적기능사	과제명	지적제도 및 면적측정
------	-------	-----	-------------

- 3) 주어진 관측점 분 1과 분 2의 방위각과 거리를 이용하여 분할점을 계산하고,
 ‘요구사항 2)’ 에서 계산된 필지와 교차되는 지점의 최종분할좌표를 결정하시오.
 (단, 분할점 및 최종분할좌표결정은 m 단위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구하시오.)

측점	관측점	방위각	거리	비고
4119	분 1	80° 57′ 10.5″	169.23	
	분 2	138° 47′ 39.7″	147.67	

- 4) 완성된 필지를 대상으로 원면적이 9034 m² 인 전주시 완산구 중동 1164(지목: 대)를
 계산된 분할선을 이용하여 2필지로 분할하고, 지적 관련 법규 및 규정 등에 맞게
 면적측정부를 작성하시오.
 (단, 분할필지의 좌측을 원지번으로 부여하고, 당해 지번의 최종 종번은 1164의 3
 이다.)

- 5) 주어진 서식파일을 이용하여 지적측량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색인도, 제명 및 축척과
 주어진 지번, 지목, 도곽선수치 등을 문자로 입력하고, 지적 관련 법규 및 규정 등의
 서식에 따라 최종 지적측량결과도를 작성하시오.

자격종목	지적기능사	과제명	지적제도 및 면적측정
------	-------	-----	-------------

2. 수험자 유의사항

※ 다음의 유의사항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에 답하십시오.

- 1) 명시되지 않은 조건은 지적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릅니다.
- 2) 정전 및 기계고장 등에 의한 자료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저장합니다.
- 3) 시험 시작 전 바탕화면에 본인 비번호로 폴더를 생성하고, 폴더 안에 작업내용을 저장합니다.
- 4) 작업이 끝나면 감독위원의 확인을 받은 후 파일과 문제지 및 답안지를 제출하고, 본부요원 입회하에 본인이 직접 최종 지적측량결과도를 출력합니다. 이때 출력한 최종 지적측량결과도는 수험자 본인이 직접 확인한 후 최종 제출합니다.
- 5) 최종 지적측량결과도는 다음에 유의하여 출력합니다.
 - ① 용지 크기는 A3 크기로 하시오.
 - ② 최종 지적결과도의 출력은 2회에 한하여 출력하십시오.
- 6) 지급된 저장매체(USB 등) 및 출력물은 반드시 제출합니다.
- 7) 시험 종료 후 PC에 저장된 시험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 삭제하고 퇴실합니다.
- 8)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채점 대상에서 제외하니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 - 기권
 - 수험자 본인이 수험 도중 시험에 대한 포기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
 - 실격
 -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
 - 출력작업을 시작한 후 다시 작업내용을 수정하는 경우
 - 수험자의 잘못으로 최종 지적측량결과도가 출력이 아니 되는 경우
 - 출력시간 10분을 초과한 경우(단, 출력시간은 시험시간에서 제외됩니다.)
 - 장비조작 미숙으로 파손 및 고장을 일으킬 것으로 감독위원 합의하여 판단되는 경우
 - 미완성
 - 시험시간 내에 요구사항을 완성하지 못하여 작품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
 - 시험시간 내에 제출하였으나 누락된 부분이 많아 작품의 완성도가 현저히 떨어져 시험위원이 미완성으로 합의한 경우

※ 국가기술자격 시험문제는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이고, 저작권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. 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복제, 배포, (전자)출판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.